

『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원활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제명을 허가받은 명칭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” 으로 동일하게 변경
- 의료법인외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,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확대 규정(안 제4조제1항의3)
 - 요양병원입원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 겸임 가능
 -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에 기여

4. 참고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의료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2008년 4월 개원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제명을 “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”에서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”으로 변경하고
- 의료법인의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을 겸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함으로서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 관련규정에 저촉사항 없음